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68
----------	------

발의연월일 : 2017. 3. 9.

발의자 : 김도읍 · 성일종 · 정태옥
최연혜 · 곽대훈 · 윤한홍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염동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p> <p><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
<p><u>③ (생 략)</u></p>	